

「2015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창의적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15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3월 6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사업화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 1인 창조기업 요건은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 - 창업지원 마케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이란?」에서 확인
 -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15.4.24.) 이전에 1인 창조기업 요건을 갖춰야 함
- (지원규모) 43억원(430여개)
-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소요비용 중 일부를 성장단계별로 지원

단계	창업기	성장기
지원 대상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매출액 20백만원 미만 기업 (예비창업자,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매출액 20백만원 이상 기업
지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과제별 실 소요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 <input type="checkbox"/> 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input type="checkbox"/> 총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과제별 실 소요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 <input type="checkbox"/> 과제별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 <input type="checkbox"/> 총 정부지원금 20백만원 이내
기업 부담	<input type="checkbox"/> 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input type="checkbox"/> 과제별 실 소요비용의 20% 이상

□ (과제 및 보조금 한도)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아래의 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2015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과제 〉

(단위 : 천원)

과제 구분	과제	보조금한도	수행기관 선택방식
지정형과제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모바일앱(웹) 제작 * 홈페이지 기 보유 기업은 제외	2,500	수행기관Pool 에서 선택
	<input type="checkbox"/> 홍보동영상 제작	5,000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시장조사	3,000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종이 <input type="checkbox"/> 전자 카탈로그 제작	3,000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포장디자인	3,000	
	<input type="checkbox"/> 제품디자인	15,000	
	<input type="checkbox"/> 브랜드(CI/BI) 개발	7,000	
개방형과제	<input type="checkbox"/> 검색엔진 마케팅 * 홈페이지 기 보유 기업에 한함	3,000	자유
	<input type="checkbox"/> 방송 광고	10,000	
	<input type="checkbox"/> 국내 전시회 참가	2,000	
	<input type="checkbox"/> 해외 전시회 참가	4,000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전문지 홍보	3,000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번역	2,000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출원(PCT 포함)	2,000	

*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앱(웹) 제작'은 둘 중 하나 또는 두개 모두 진행할 수는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2,5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업이 부담

① 예시1 (주관기업이 창업기(10백만원 이내) 기업인 경우)

과제	사업비 (보조금+기업부담금)	보조금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시각 포장 디자인	3,000천원	2,400천원	600천원	사업비에 편성 불가하며 주관기업이 부담
방송 광고	9,500천원	7,600천원	1,900천원	
합 계	12,500천원	10,000천원	2,500천원	

② 예시2 (주관기업이 성장기(20백만원 이내) 기업인 경우)

과제	사업비 (보조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제품디자인 개발	30,000천원	15,000천원	15,000천원	사업비에 편성 불가하며 주관기업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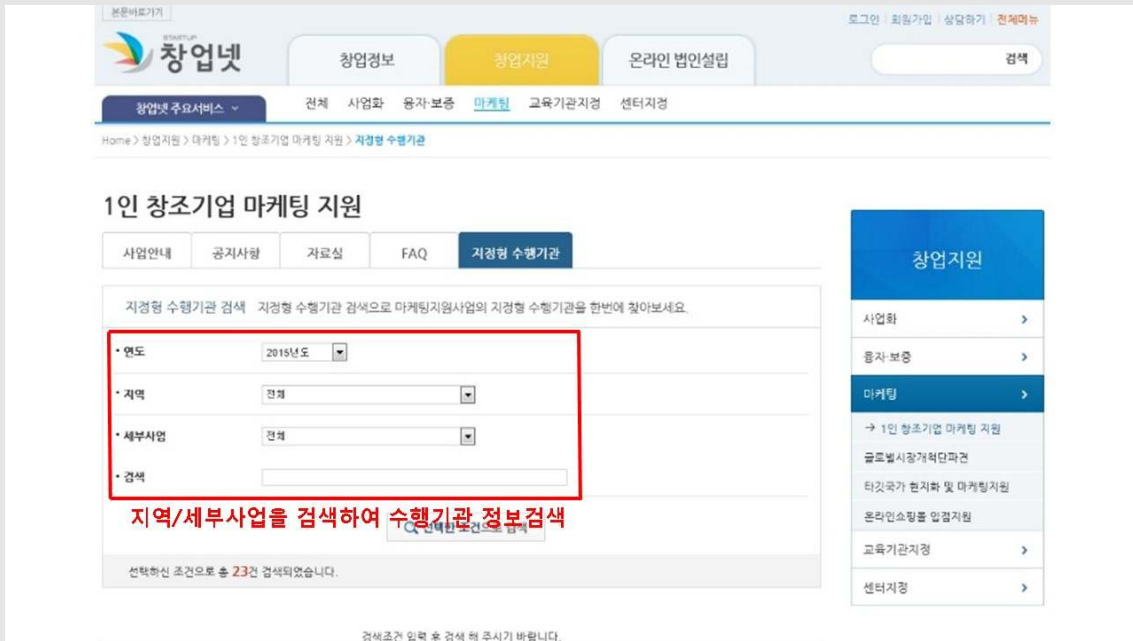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은 정부지원금 한도가 15백만원이므로 사업비 30백만원의 50%(15백만원)를 주관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 (수행기관 지정방식) 과제에 따라 “지정형”과 “개방형”으로 구분

① 지정형 : 지정형 과제는 창업진흥원에서 사전에 선정한 수행기관 중에서 주관 기업(1인 창조기업)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식

* 지정형 수행기관 현황은 창업넷(www.startup.go.kr)-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지정형 수행기관에서 확인

< 지정형 수행기관 확인 화면 >



② 개방형 : 개방형 과제는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이 수행기관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도 선택(지정형 수행기관에서도 선택 가능)하여 수행하는 방식

< 개방형 수행기관 참여제한 >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기업
3. 중소기업청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4. 최근 5년간 중소기업청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기업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기업
6. 수행기관 임직원이 주관기업의 임직원과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가족 관계인 경우
7. 지정형 수행기관이 공개적으로 불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업 참여 모집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관기업 기본요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15. 3. 24.(화)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 1인 창조기업은 협약 체결 전('15. 5. 1.) 1인 창조기업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함
- 1인 창조기업의 인증절차는 따로 없으며, 1인 창조기업의 여부 확인은 창업넷*에서 가능함

*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 - 창업지원 마케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이란?」

**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를 통해 각 지방청에서 1인 창조기업 여부 추가확인

□ 주관기업 및 신청기업 대표자(예비창업자 포함) 제한요건

휴업 또는 폐업 기업

중소기업청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및 개인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청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및 개인

신청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및 개인

*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과제가 상이하면 참여 가능

예) 타지원 사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든 이력이 있다면 "홈페이지 제작" 과제는 신청 불가하고, 홍보영상 제작이력이 없다면, "홍보영상 제작" 과제 신청이 가능

'12년 지식사업화 지원사업 및 '13~'14년 동 사업의 주관기업, '12~'13년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또는 주관기업으로 총 3회 이상 선정되었던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개인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 기업 참여 가능

수행기관 임직원과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가족 관계인 경우

당해 연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개인

3 주관기업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2015. 3. 6(금) ~ 3. 27(금) 18:00까지

- * 3.27.(금) 18:00 이후 주관기업 신청접수 불가

(접수방법) 창업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붙임1]참조

www.startup.go.kr 접속 → ①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로그인 → ② 창업지원 클릭 → ③ 마케팅 클릭 → ④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클릭 → ⑤ 신청하기 클릭 → ⑥ 1인 창조기업 신청바로가기 클릭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서류 각 1부

〈주관기업 신청 서류〉

- ① 주관기업 참여신청서(창업넷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 ② 주관기업 사업계획서(별첨 양식 활용)
- ③ 수행기관 현황 요약(수행기관에 요청하여 작성, 별첨 양식 활용) ※서면평가 통과시 제출
 - 검색엔진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 외 매거진 상품홍보, 방송광고, 지식재산권 출원 과제는 제출하지 않음
 - * 단, 위의 과제 수행시 매체(네이버, 방송국, 잡지사, 변리사무소, 전시 주관 업체 등)에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타업체를 통해 수행 할 경우 타업체에 대한 수행기관 현황 요약서 제출
- ④ 신청 과제별 2개 이상 견적서 제출 (신청 수행기관 포함) ※서면평가 통과시 제출
 - 비교 견적서 발급이 어려운 과제(검색엔진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 외 매거진 상품홍보, 방송광고, 지식재산권 출원)의 경우 수행기관의 견적서 1부(산출근거 포함)를 제출
 - 과제 별 조건 및 참고사항[붙임 3]을 반드시 참고하여 수행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함
 - * 단, 위의 과제 수행시 매체(네이버, 방송국, 잡지사, 변리사무소, 전시 주관 업체 등)에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타업체를 통해 수행 할 경우 타업체에 대한 수행기관 현황 요약서 제출
- ⑤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입자 명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⑥ 최근 2년간(‘13~’14) 재무제표 (성장기로 신청하는 기업은 제출 필수)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로 대체
- ⑦ 우대사항 증빙서류([붙임 2] 참조)
- ⑧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별첨 양식 활용)
- ⑨ 주관기업 청렴 서약서(별첨 양식 활용)
- ⑩ 주관기업 서약서(별첨 양식 활용)

* 신청서류 ②,③,⑧,⑨,⑩ 양식은 창업넷(www.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서 다운
 ** 신청서류 ③,④ 는 서면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제출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방법) 요건검토 및 평가(서면,대면)를 통해 주관기업 선정

-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을 검토
- ②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1.5배수 이내로 선발(지방청, 평가위원회)
 - * 평가지표 : 신청기업 대표자의 전문성, 창의성, 사업성, 고용창출가능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③ (대면평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주관기업 선정 및 통보(지방청, 평가위원회)

5

추진 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시 **단기(3개월)**, **장기(6개월)**는 협약체결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종료 후 안내

6

기타 사항

□ 유의사항

과제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협약체결 이전에 시작한 과제는 지원하지 않음

주관기업은 신청 후 신청과제, 파일 업로드 현황,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

* **창업넷(www.startup.go.kr)-My 창업넷**에서 확인 가능

수행기관의 주관기업 부담금 대납, 허위계산서 발행 등 부당거래 행위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고발 조치 등 엄벌

중도 사업포기에 따른 위약금은 주관기업에서 부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지방청 선택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

대면평가 대상자 통보, 평가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기업 소재 지역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별도 안내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유의 바람

※ 3.27.(금) 18:00 이후 주관기업 신청접수 불가

사업 운영지침,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참여 제한	비고
협약 해약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3년 이내	보조금 전액 환수 (보조금 미지급)
	운영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이내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연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1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으로 중단한 경우	-	
	천재지변,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과제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	1년	
	특별한사유 없이 사업비 관리기준 교육 및 마케팅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	
	협약 체결 이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및 전담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선정 및 협약 전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충족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	사업계획을 협약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단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 조치)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변경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7

사업 문의

- 신청문의(지방중소기업청) : 신청기업 소재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

지방중기청	부서	전화번호	관할 지역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05	서울
부산울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0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경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1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818	경기도
인천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6	인천광역시
대전충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16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3	강원도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10	충청북도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5	전라북도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21	경상남도

- 1인 창조기업 요건 문의 등(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담당기관		전화	문의사항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송민섭 주임)	042-480-4384 jara@kised.or.kr	1인 창조기업 요건, 수행기관 지정 방식 등
	지식서비스팀 (최유리 주임)	042-480-4382 choiyuri@kised.or.kr	
시스템 관리 (웹캐쉬)	전진형 사원	042-480-4422 truewing@webcash.co.kr	창업넷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 신청 접수 및 종합안내시스템 : 창업넷(www.startu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붙임 1]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및 확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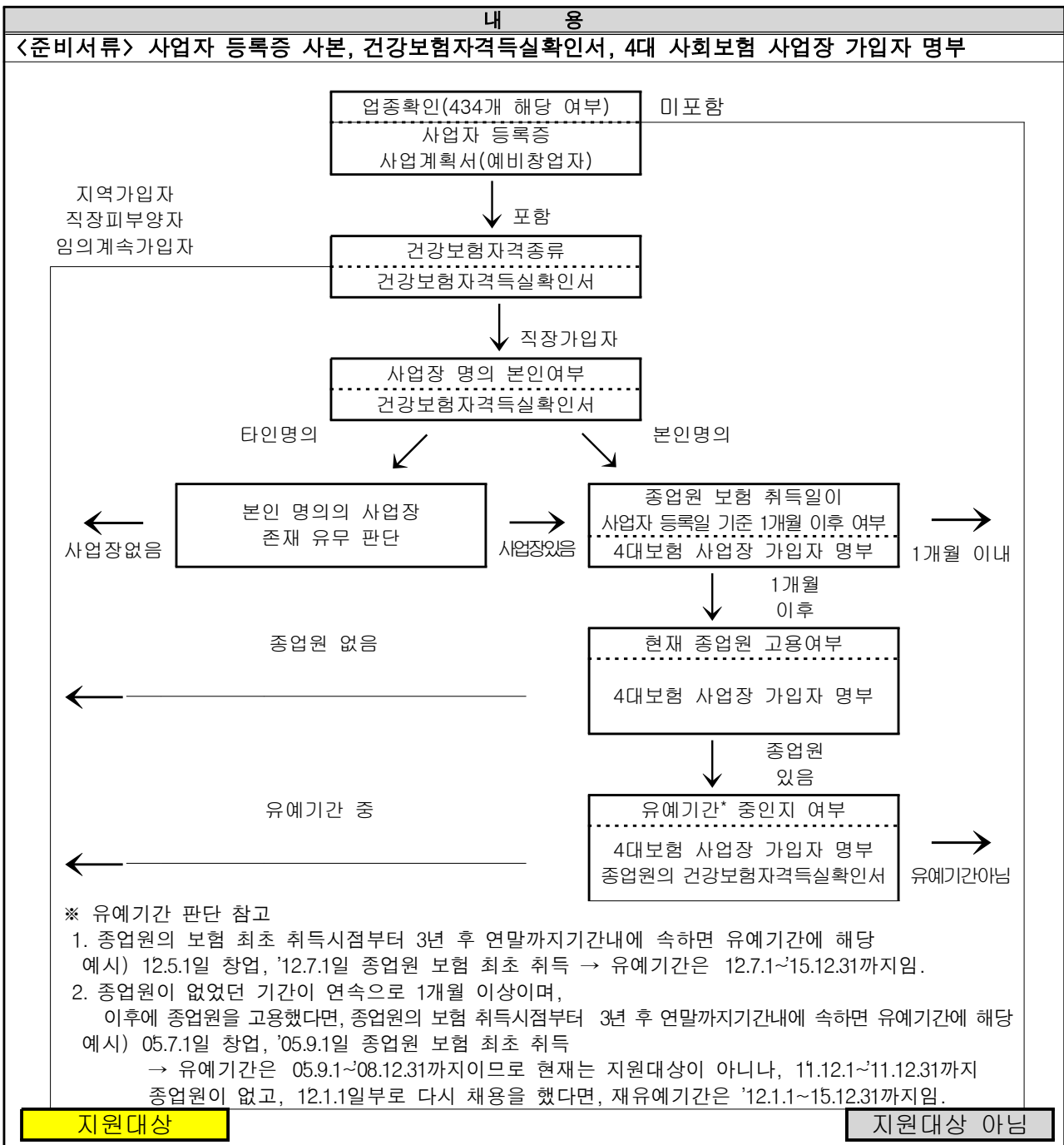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및 확인절차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목,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창업넷 홈페이지(www.startup.go.kr)- 창업지원 마케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이란?」 참조

상시근로자 유무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에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유예기간 확인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붙임 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우대 배점 세부내역

구분	연번	우대 사항	가점	확인
한정적 가점사항 (최대 2점)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각 1점	해당 인증·확인·승인서류
	②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⑤	창조경제혁신센터 발굴기업 중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한 기업		
중복가점 사항	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1점	3개월 이상 입주기업 확인서(입주계약서 등) *졸업기업은 해당 되지 않음
	②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추천기업	1점	센터장 추천서(3개월 이상 입주기업에 한함) *졸업기업은 해당 되지 않음
	③	앱창작터 수료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1점	전문 및 심화과정 수료증
	④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 기업 확인서류
	⑥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	1점	공고일 기준
	⑦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1점	주관기업으로 선정 시 협약이전에 1인 창조기업으로 창업하는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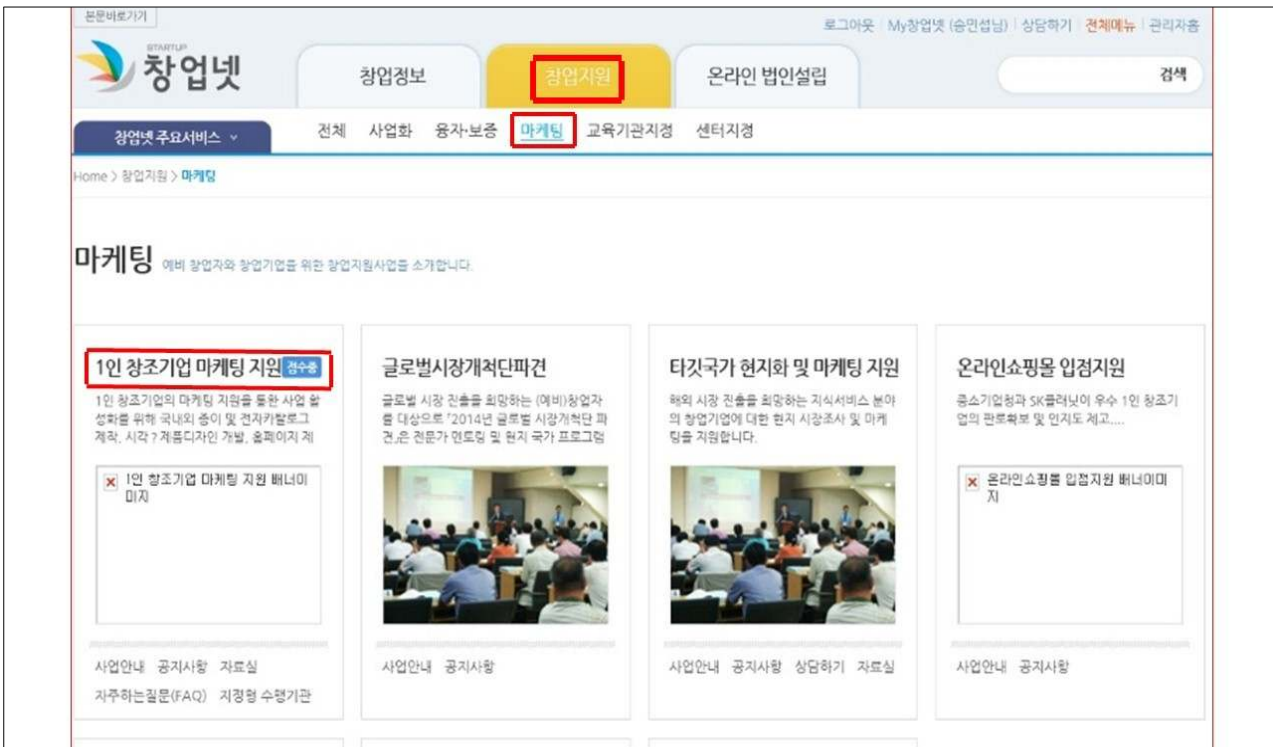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과제 별 조건 및 참고사항

※ 아래의 조건은 사업수행의 기본조건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조건 변동 가능
(단, 아래의 조건 수준에 부합하는 결과물 이어야하며, 이는 최종 평가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확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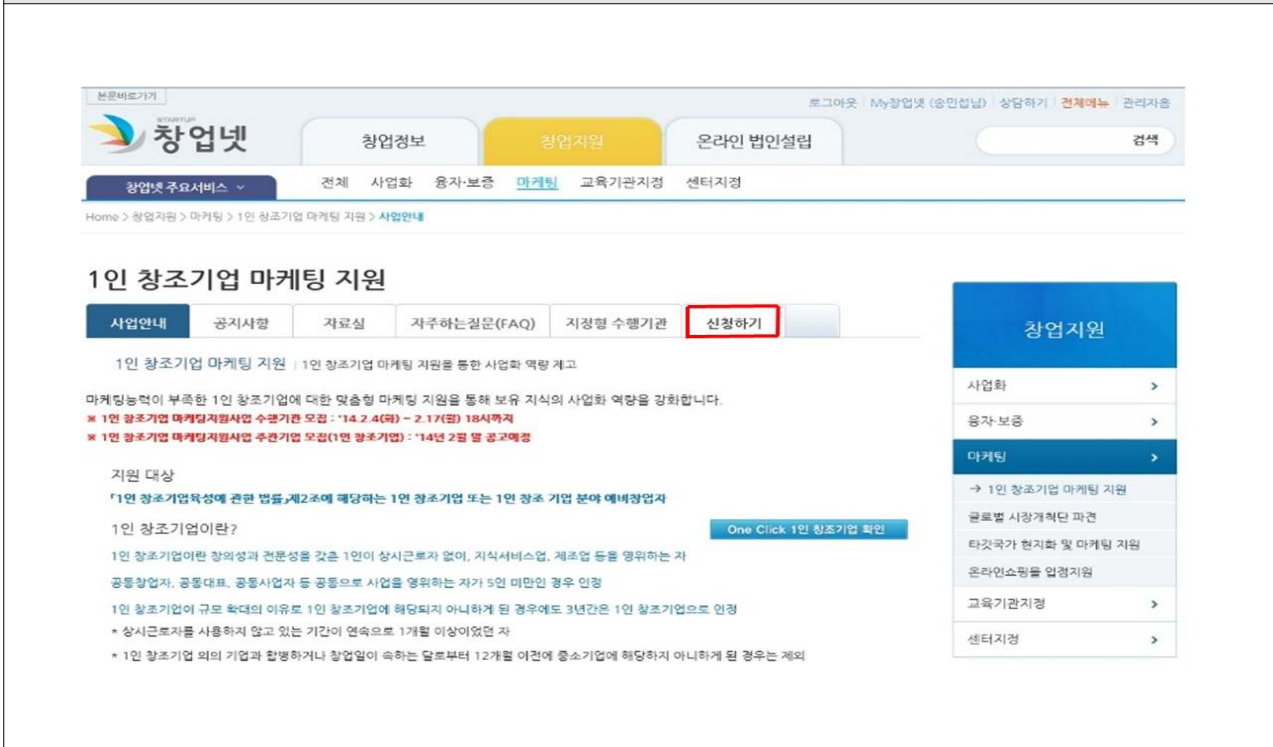
분야	과제	개발내용 및 조건	
사업화 디자인개발	전자 카달로그	내용	기업과 제품 소개자료를 웹(Web)에서 책자처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카달로그
		조건	25page이상(페이지 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경우 조정가능하며, 사업소개 PPT제작 등으로 조정 가능) 기획, 제품촬영(출장포함), 인트로 및 제품특장점 구현, 플래시, 3D VR, 애니메이션, html코딩, 디자인 포함 단순 e-book 형태의 제작물은 지원불가
	종이 카달로그	내용	기업·제품 소개자료를 책자형태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카달로그
		조건	16page 이상(2,000부 이상, 페이지수·제본수량·종이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경우 조정가능하며, 명함·포스터·브로셔 등으로 조정) 기획, 제품촬영(출장포함), 디자인 포함 최종산출물은 출력물 형태로 제공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내용	제품의 외형, 완제품으로의 포장 등을 위한 디자인 개발
		조건	기획, 제품촬영(출장포함), 디자인, 인쇄필름(제판본) 또는 CTP출력 포함
	제품 디자인 mock-up 등	내용	제품 생산에 앞서 제품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위한 실물 크기 모형 제작
		조건	개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 개발 등 (워킹 목업 제작비는 불인정, 시제품 제작비용은 지원업체 부담)
브랜드(CI, BI) 개발 지원	내용	CI(Corporate Identity) :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으로 로고나 심볼마크의 제작 BI(Brand Identity) :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제작	
	조건	시장조사, 기획, 컨셉도출, 베이직 시스템 제안, CI·BI 제작(AI파일, jpg파일 제공), 브랜드 매뉴얼북 제작, 소봉투, 대봉투, 명함 등에 적용한 시안 제안	

분야	과제	개발내용 및 조건	
온 라 인 사업화 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제작지원	내 용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 웹/앱 개설
		조 건	회사의 컨셉과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제작(공지사항, 제품내용 등 포함), 제품 판매를 위한 쇼핑몰 제작의 형태 등 가능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 지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제품, 기업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모바일 웹 또는 앱 개발 모바일 앱의 경우 앱스토어 등록까지 지원
	검색엔진 마케팅	내 용	검색 도구를 단순한 검색에 그치는 것이 아닌 특정 웹 사이트로의 방문을 유도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
		조 건	기업 또는 제품 등이 주요 검색엔진 검색결과 상위 페이지에 노출, 기획·적용·모니터링 등으로 지원
오 프 라 인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조사(컨설팅)	내 용	해당분야의 바이어 발굴, 맞춤형 시장조사, 원부자 재공급선조사 등
		조 건	시장조사 자료집, 시장조사 보고서 제작
	국내 전시회 참가	내 용	기업·제품의 홍보를 위해 인지도 있는 국내 전시회에 참여
	신문,잡지에 상품 홍보 (국내외 전문지 홍보)	내 용	기업의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겟시장 등에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유명 홍보전문지에 게재 *ABC협회에 등록된 매체에 한해 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내 용	기업·제품의 소개 영상 제작
		조 건	기획, 기업·제품촬영(출장포함), 인트로 및 제품특장점 구현, 플래쉬, 애니메이션, 디자인 포함
	지식재산권 출원 (상표 및 PCT 포함)	내 용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 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출원 일체
		조 건	지식재산권 등 출원 획득 출원 시 관납료/특허법인 대행료 영수증, 출원번호 통지서, 출원명세서 제출
	외국어 번역 지원	내 용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제품 소개 외국어 번역 지원
		조 건	제품 카달로그, 국제 계약서 등에 대한 외국어 작성·번역, 전문번역 회사 법인업체활용(프리랜서 불가)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내 용	기업·제품의 홍보를 위해 인지도 있는 국외 전시회에 참여	
	조 건	전시회 참가·부스임차비, 물품구매비(전시회용 판넬, 현수막, 배너) 지원 (식비, 숙박비 항목 50%지원, 기타 간접비 지원불가)	

[붙임 4] 신청페이지 접속 절차



www.startup.go.kr 접속 → ①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로그인 → ② 창업지원 클릭 → ③ 마케팅 클릭 → ④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클릭 → ⑤ 하단의 페이지로 이동



① 신청하기 클릭 → ② 하단의 페이지로 이동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Start marketing)

2015년 마케팅지원사업 관리

구분	신청기간	신청하기
1인 창조기업	2015-01-01 00:00 ~ 2015-03-31 00:00	신청 바로가기
수탁기관	2015-01-01 00:00 ~ 2015-02-28 00:00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 2015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신청은 개인회원(대표자 아이디) 으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015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신청에 앞서 공고문을 꼭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바로가기 [바로가기 >](#)

창업지원

- 사업화 >
- 용자·보종 >
- 마케팅 >**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글로벌시장개척단파견
- 타깃국가 현지화 및 마케팅지원
- 온라인소평을 입점지원
- 교육기관지정 >
- 센터지정 >

① 1인 창조기업 신청바로가기 클릭 → ② 하단의 페이지로 이동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참여신청서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기업들께서는 공고의 제출 서류 살펴보셔서 신청하여 주시고, 이미 신청한 기업들께서는 제출 서류 누락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쇄하기]

접수번호 : A-2015-0002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합수기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신청구분	
주업종	비제조업	기업구분	예비창업자
기업명	창진원	여성기업여부	아니오
사업자등록번호	--	장애인 기업여부	아니오
창업일자		상사근로자	0명
대표자	일반		
대표자주민번호	881221-1401581		
업종구분	경보서비스업 > 포탈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63120		
직전년도 매출액	2014년 0백만원	주생산(서비스)종목	창업
주소	(701-160) 대구광역시 동구 북골로16길 160 1111 (문산동)		
전화번호	041-111-1234	팩스번호	02--
성명	일반	전화번호	02-1234-1234
휴대폰번호	010-1234-1234	이메일	test@chollian.net
구분	새부사업	수령기관선택	총사업비
			경부지원금
			자부담금
			부가가치세

창업지원

- 사업화 >
- 용자·보종 >
- 마케팅 >**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글로벌시장개척단파견
- 타깃국가 현지화 및 마케팅지원
- 온라인소평을 입점지원
- 교육기관지정 >
- 센터지정 >

참여신청서 작성